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1. 7. 7 선고 2020가단55799 판결 [계약금 반환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선린

담당변호사 김경은

피 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석종

변 론 종 결 2021. 6. 2.

판 결 선 고 2021. 7. 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국토개발을 위한 종합적 전문적 기술용역업, 측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C과 D는 2019. 1.경 피고의 대표이사 E와 충청남도 당진시 F 일대(이하 ‘이 사건 부지’라고

한다)에 토석채취허가 및 개발행위 인허가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논의하였고, 이에 C과 D는 2019. 2. 13. 이 사건 사업을 목적으로 원고를 설립하고,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9. 3. 11. 이 사건 부지에 대한 토석채취허가 및 개발행위 인허가

기술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용역대금 3억 8,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체결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1억 1,4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1) 한편, 애초에 G 주식회사(이하 ‘G’이라고 한다)가 2018. 4. 23. 이 사건 부지에 대한

토석채취허가를 받았으나 원상복구비를 예치하지 못하여 2018. 9. 17. 토석채취허가가 취소되었다.

이에 G은 2018. 11. 7. 충청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2019. 1. 21.

‘당진시장이 2018. 9. 17. G에게 한 토석채취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인용재결심판을 받았다.

2) G은 토석채취허가기간이 2018. 12. 31.자로 만료되자 토석채취허가기간연정신청을 하였으나,

2020. 3. 2. 위 신청이 반려되었으며, 2020. 3. 4. 원상복구비에 대한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고,

2020. 3. 6. 연장신청거부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였으나, 2020. 3. 19.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2020. 4. 16. 당진시장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20구합104483호로

토석채취기간연장허가신청 반려처분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현재 위 소송이 계속 중이다.

마. 원고는 2019. 5. 2.경 피고에게 G의 기존 토석채취허가로 인하여 이 사건 부지에 대한 이 사건

사업이 사실상 불가능함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고, 계약금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바. 피고는 2019. 5. 31.부터 2019. 8. 26.까지 사이에 수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계약금 중 7,000만

원을 반환하였다.

사. 이 사건과 관련된 이 사건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1조(과업의 범위)

을(피고)이 갑(원고)에게 제공할 용역의 범위로 토석채취허가 및 개발행위 인허가 용역과 관련된 제반 성과물을 작성하고 대관협의 및 인허가를 수행하는 것으로 한다.

○ 제13조(계약의 해지)

갑(원고)은 다음의 경우에는 본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과업의 성과물에 따라 대가를 정산처리한다.

① 을(피고)의 과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때

○ 제14조(정산처리 등)

갑(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이 해지 또는 중지되는 경우에는 갑(원고)은 을(피고)이 이미 수행한 업무를 검수하고 계획도서를 인수한 후 용역대가를 기성율(성과물)에 의거 정한하여야 한다. 단, 을(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이 해지될 경우에는 수령한 용역비를 전액 환불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계약서 제14조 단서에 따라 피고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계약금 상당을 반환해야 한다. 그런데 앞서 거시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① 행정기관으로부터 이 사건 부지에 대한 토석채취 및 개발 인허가를 받는 것이 피고의 계약상 의무이고, 원고가 이에 대한 대가로 용역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던 점, ②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당시 G이 이 사건 부지에 대하여 이미 토석채취허가를 받았으나 복구비 미이행으로 인한 취소처분을 둘러싼 분쟁이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의 채무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 및 계약이 체결된 이후 행정기관에 토석채취허가가 가능한지를 문의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확인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점, ③ G과 당진시장 사이의

행정소송에 따른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이 사건 부지에 대한 신규 인허가 신청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현재 당진시장의 입장이고, G이 추가 복구비를 지급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토석채취기간연장이 가능하다는 당진시장의 입장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용역계약은 목적달성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이 사건 부지에 대한 토석채취인허가 등의 채무이행이 불가능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2019. 5. 2.경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통보함으로써 이 사건 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 1억 1,400만 원 중 이미 지급한 7,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4,400만 원(= 1억 1,400만 원 - 7,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 다음날인 2020. 9.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하선화